

1. 개정이유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전환해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이 완화된 제조시설기준을 적용받도록 단서조항 신설 및 특별교육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 조문 명확화, 인용조문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간소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등 그 외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 별표 4 제2호가목3), 별표 12 제3호5) 및 6), 별표 22 제2호타목 및 파목, 별표 31 제4호

- 1)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맞는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적용
- 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에 대한 완화된 제조시설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맞춤형 특별교육을 신설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7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시 제출하는 자격증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다.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 신설(안 별표31 제4호)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교육시간 축소 등 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

라. 법령 조문 명확화 및 인용조문 정비

- 1) 특정설비의 제조·검사기준에서 제외되는 압력용기 대상을 명확화(안 별표 12 제4호다목6))
- 2) 특정설비의 명칭을 시행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와 동일하게 반영하고,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부속설비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문 명확화(안 별표 22 제2호라목, 사목 및 카목)
- 3) 인용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4호로 개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개정(안 별표 2 제1호마목, 별표9 제1호가목7)나), 별표 9의2 제2호나목 3))

마. 동일사업소 내 상호·대표자 변경시 일괄 허가·신고 허용(안 별지 제1

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호·대표자 변경시 시설별 허가·신고 방식에서 일괄 허가·신고 가능하도록 서식의 작성방법 및 일괄 신고대상시설 서식 신설

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3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사장이 정기검사 시기를 읍·면·동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규제위 결과에 따른 재검토 대상 규제 반영(안 제64조제2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3.10) 결과를 반영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 대상이 되는 규제 개정

아. 정부조직법 개정('25.10)에 따른 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별표 4, 별표 5,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5, 별표 19, 별표22, 별표 24, 별표 27, 별표 30호, 별표 36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호의3, 제7호의2, 제14호, 제17호,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32호의2, 제35호, 제37호, 제38호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1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제27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이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별로 따로 정하는 시기

제6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2019년 1월 1일”을 각각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

별표 4 제2호가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표 5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3) 단서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으로 한다.

별표 12 제3호나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다음의”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 반도체 제조용 EUV 노광장비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할 것

가)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종류 중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검사의 종류	대상	구성항목	주기
제품확인 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	상시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생산공정 검사	제조공정·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종합공정 검사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3년에 1회
		수시품질검사	3년에 1회 이상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 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① 재료의 기계적 · 화학적 성능
- ② 내압성능
- ③ 기밀성능
- ④ 작동성능
-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 ·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②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만을 말한다)
-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6)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할 것

가) 설계단계검사

- ① 설계단계검사는 특정설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것
 - ㉠ 해당 제조소가 처음으로 특정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특정설비의 구조·모양·주요 부분의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 ② 특정설비의 설계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 재료의 기계적·화학적 성능
 - ㉣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 내압성능
 - ㉥ 기밀성능
 - ㉦ 작동성능
 -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성능

나) 생산단계검사

- ①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 실시할 것
- ②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검사의 종류	대상	구성항목	주기
제품확인 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	상시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생산공정 검사	제조공정·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종합공정 검사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1년에 1회

	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	---------------	--------	-----------

③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재료의 기계적·화학적 성능

㉡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성능

④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⑤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⑥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만을 말한다)

㉢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별표 15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의 검사주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의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하단 비고 제5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제2호의 라목 중 “자동차용가스 자동주입기”를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긴급차단밸브”를 “긴급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호 아목 4)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카.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파.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하단의 특정설비의 종류 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2) 비고 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제2호나목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1)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1 제2호가목 본문 중 “특별교육”을 “특별교육(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또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특별교육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양성교육”을 “양성교육(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또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특별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 6)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같은 표 제4호다목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별표 36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신청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신청인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교육에 관한 경과규칙) 별표 31의 개정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 별표4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세 부 내 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 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 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 호		
	대 표 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붙임)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

고압가스 시설 허가번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상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 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 호		
	대 표 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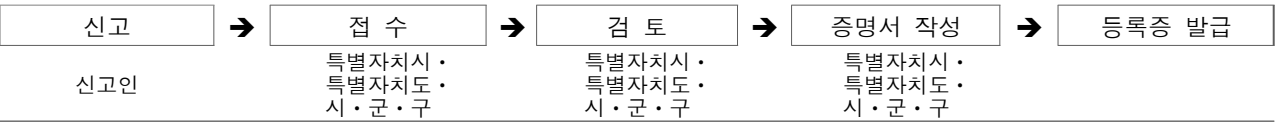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1.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정사유 조회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생년월일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시, 동일 사업소 내 여러 개의 고압가스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에 고압가스 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불임)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

고압가스 시설 허가번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m²)

[] 선임
안전관리자 [] 해임 **신고서**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	------	------	-----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동의 (서명 또는 인)
선임					
해임					
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가) []선임 []해임 []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양성교육이수의 경우 G-Topia(http://gtopia.kgs.or.kr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④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 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 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를 말한다.	⑤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 광장비</u>
<u><신 설></u>	<u>1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u>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 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u>따른</u> <u>다. <단서 신설></u>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 ----- <u>따르</u> <u>고, 이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u> <u>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u> <u>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u> <u>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u> <u>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u> <u>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u> <u>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u> <u>육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u> <u>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하</u>

② ~ ④ (생략)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생략)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u>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별로 따로 정하는 시기</u>
③ ~ ⑥ (생략) 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삭 제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서 등의 제출서류: 2019년 1월 1일	<삭 제>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 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19 년 1월 1일	3. ----- ----- ----- 2024 년 1월 1일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 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4. ----- ----- ----- 2024년 1월 1일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 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 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5. ----- ----- ----- 2024년 1월 1일
6. 삭 제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 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19년 1월 1일	7. ----- ----- ----- 2024년 1월 1일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 른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19년 1월 1 일	8. ----- ----- ----- 2024년 1월 1일